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기업의 기회발전특구로의 사업장 이전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53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9
1. 기회발전특구 개요 및 주요 인센티브	9
2.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2026년 2월 기준)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상웅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1.
3. 회부연월일 : 2025. 1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지방에 대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회발전특구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경우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 소재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u>경우</u>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경우 또는 지방에 있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③·④ (현행과 같음)

기회발전특구는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법 제23조제4항 및 제5항1)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 1)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의 지원 패키지가 제공됨
(참고자료 1).

2025년 7월 산업통상부가 전북(남원)·경남(밀양, 하동, 창녕) 기회발
전특구를 추가 지정한 데에 이어 2026년 2월 부산(강서구), 울산(북구,
동구)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함에 따라 전국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총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운영 중에 있음(참고자료 2).

같은 법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제2항)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²⁾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를 감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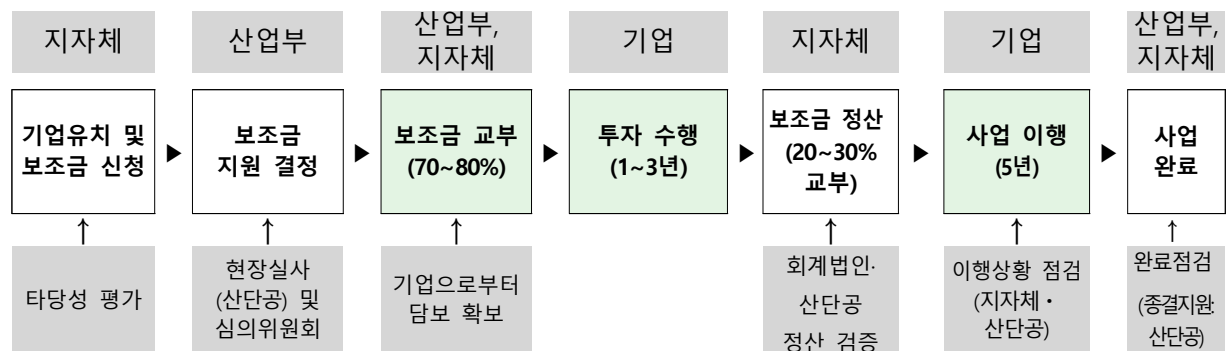
- 2)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
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
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
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
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은 지방에 사업장용 건축물의 신축·증
축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신설·증설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신규
채용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신설·증설 인정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
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및 국내 기업의 지방 사업장 신·증설 투자 등³⁾에 대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수행절차



자료: 산업통상부

이때,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소재한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지원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소재한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3) 이외에도 상생형지역일자기업의 지방투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한 지방 소재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설정에 따라 지방 소재 기업이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고용 또는 생산 설비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기존의 주요 지방 사업장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되어 기회발전특구가 아닌 지방의 경기침체를 야기하고,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부고시)⁴⁾를 살펴보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제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부고시)」 제9조(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4.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5.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및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제10조(지방 신·증설 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증설 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최소 10명) 이상일 것. 다만, 10퍼센트 미만이라도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중소기업은 20명 이상, 중견기업은 30명 이상, 대기업은 70명 이상일 것
나. 제5조제10호의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20명 이상일 것
3.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 대상 기존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유동성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장을 매각 후 해당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 및 고용을 계속 유지하거나,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기존사업장 규모(면적 및 고용) 이상의 대체사업장(리모델링 포함)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할

9조제2항제5호)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장의 폐쇄 및 매각을 원칙으로 제시하여 지방으로의 실질적인 생산 기반 이전을 보장하고,

지방 신·증설 투자(제10조제3항제4호)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방 신·증설 투자 촉진에 따라 기존사업장의 생산기반이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 소재 기업의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시 기존사업장의 적정 유지 규모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지방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신설·창업하는 경우 현행법 제23조에 따라 규제특례 및 세제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가산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해소라는 정책 목적에 기여하는 효과가 낮은 지방 간 사업장 이전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 규정을 명문화할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⁵⁾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5)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파주시, 양주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등), 자연보전권역(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광주시 등)이 비(非)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함.

에 소재한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미비하게 됨.

또한, 현행법 제23조제1항⁶⁾은 수도권 내 지역이라 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기회발전특구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6년 2월 기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은 없으나,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들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개정안의 규정이 지방에 소재한 기업으로 하여금 수도권 내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도록 유인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현행법 제24조의 본래의 취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규정에 대해서는 ①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기업의 지방으로의 사업장 이전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② 지방 소재 기업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으로의 사업장 이전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6)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468

참고 1

기회발전특구 개요 및 주요 인센티브

(출처: 산업통상부)

- **(개념)**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 **(대상지역)**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 **(입지)** 지방정부가 투자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 선정
 - *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旣 구성된 계획입지, 개별입지 등 모두 가능
 - **(면적)**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4.95km²(150만평), 도: 6.6km²(200만평)) 내에서 복수의 특구 신청 가능
- **(지정절차)** 지방정부(시·도지사)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산업부장관이 지정
- **(지정요건)** 기업의 입주수요,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

< 기회발전특구 주요 인센티브 현황 >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소득·법인세	• 수도권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내 취득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5년 100% + 2년 50% 감면)
② 취득·재산세	• 수도권에서 특구(비수도권)로 기업 이전 시 *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감면,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감면 • 특구 내 창업 시 - (비수도권)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 • 공장 신·증설 시 - (비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
③ 상속세	•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④ 이자·배당 소득세	•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일정 기간(10년) 이상 투자 시 9% 분리과세
⑤ 양도소득세	• 특구 내 주택 취득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⑥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5~10%p) • 특구 내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⑦ 외투 현금지원	• 특구 내 외투 현금보조금 분담비율 우대(국가:지자체=80:20)
⑧ 인력양성사업	• 특구 입주기업 대상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25년, 35억원)

※ 지방 소재 기업이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공장 신·증설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참고 2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2026.2월 기준)

(출처: 산업통상부)



5차 부산(강서구) / 울산(북구, 동구)